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35 호

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3- 1460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 공고 제2013- 1462호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4
- 공고 제2013- 1464호 제2회 국민창안대회 아이디어 공모(기간연장) 5
- 공고 제2013- 14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11
- 공고 제2013- 1471호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공사송달(소래샛길 소2-14 호선 도로개설공사) 29
- 공고 제2013- 1472호 도로지정 공고 31
- 공고 제2013- 1479호 자동차 차령초과말소 예고통지 불능자에 대한 공고 게재 의뢰 32
- 공고 제2013- 1488호 2013년 제1회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공고 33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 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 공고 제2013- 32호 40
- 남동구의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제2013- 41호 41

고 시

- 고시 제2013- 102호 통반구역 조정 결정 고시 63
- 고시 제2013- 103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68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공고 제 2013 - 1460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설치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계획

- 사 업 명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
- 설치개소 : 4개소
- 설치장소

순번	학교명(유치원)	주 소	설 치 위 치	비 고
1	구월서초등학교	구월동 1098-7	POLE 신설	
2	간석초등학교	구월동 4-100	POLE 신설	
3	약산초등학교	간석3동 111-1	POLE 신설	
4	석정초등학교	간석동 614-6	POLE 신설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기준)

-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해당사유, 주소, 성명(기관·단체장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연락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내용은 별도의 서식없이 자유롭게 작성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전화 : 032-453-2883, FAX : 032-453-2889

5. 유의사항

- 공고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로 문의 (☎032-453-2883)하시기 바랍니다.
- ※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구보 및 구청 및 각동 게시판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 - 1462호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안 건 명

-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13. 10. 14 ~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종료 시까지

3. 기 타

- 부의안건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기획예산실(☎453-2093)에 비치하였으며, 또한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공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1464 호

창안 한마당, 구민행복을 디자인하자!

제2회 구민창안대회 아이디어 공모

우리구에서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구정발전 및 구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접목하고자, 구민 및 공무원 여러분의 참신하고 발전적인 제안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10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구민창안이란

- ◆ 사회적으로 ‘가치’와 ‘필요’가 있는 아이디어를 말하며, 우리 사회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 상상력 넘치는 공익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과 대안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 공 모 명 : 창안 한마당, 구민행복을 디자인하자!

● 공모기간 : 2013. 8. 21 ~ 10. 31 (72일간) ※ 당초 : 8.21 ~ 10.11(52일)

● 참가자격

- 남동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누구나 (구민 및 공무원)
-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 등 생활권이 있는 사람

● 공모분야

- 자유과제(10분야)

- | | | |
|----------------|------------|------------|
| ① 소통과 화합의 참여행정 | ② 생활편의 | ③ 복지·봉사·기부 |
| ④ 생태환경도시 조성 | ⑤ 문화·예술·체육 | ⑥ 지역경제활성화 |
| ⑦ 교통·주차환경 개선 | ⑧ 교육환경 개선 | ⑨ 기타 |

- 지정과제(5분야)

- ① 남동구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방안
- ② 소래포구 축제의 향토체험 이벤트 방안
- ③ 남동구 특성을 살린 마을만들기
- ④ 골목길 주차난 해결 방안
- 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 공모방법 : 서면 및 인터넷 접수

- [구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참여마당/행복제안) (www.namdong.go.kr/참여마당/행복제안)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 (www.epeople.go.kr/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
- 우편 및 팩스 :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기획예산실 제안담당자/
(Fax) 032-453-2059 (제출 후 반드시 전화로 확인 요망)

● 심사기준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평가

● 포 상 : 총 7명

- 금 상 : 상금 2,000천원, 1팀(명)
- 은 상 : 상금 1,000천원, 1팀(명)
- 동 상 : 상금 500천원, 2팀(명)
- 장려상 : 상금 300천원, 3팀(명)

● 이런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현재뿐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남동구에 있음.
- 신청서류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제출하되, 적의 조정 가능함.
- 응모자는 제안서가 기한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부지연으로 인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중복 응모된 제안인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함.
- 공동응모자는 시상금이 주제안자(대표자)에게 지급됨.
- 제안내용이 표절 등 기타 부정의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 환수 조치함.
- 기타 문의사항 : 남동구청 기획예산실(☎032-453-2050)

(앞 쪽)

제 안 서					접수번호	
수 신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연필로 기재)	
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		☐ 자유제안 ☐ 지정제안				
제 안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주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팩 스 번 호		
공 동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국민제안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고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작 성 요 령 >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 지정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분야)을 기재함
- 자유제안 10분야, 지정제안 5분야중 1개 분야 선택 및 분야명 기재
- ③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⑤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 ⑥ 기대효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기여도 (%)	업무분담내용

※ 2인 이상 공동제안자가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3 - 14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 보완 및 신규 조항을 추가하고
- 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개별 법령(규정)의 내용 및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 다. 사립학교가 공유지를 학교용지 등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는 등 일부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가. 사립학교·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에 적용하는 대부료 요율을 규정함(안 제27조)
 - 1) 사립학교의 경우 일반적인 대부료 요율로 5%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학교용지 등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요율인 2.5%를 적용
- 나.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규정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 및 교환차금의 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규정하며, 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을 규정함(안 제34조, 제37조, 제37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1) 주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대부료 규정 준용)·변상금

등의 분납 이자율을 연 6%로 하던 것을 연 4%로 하고,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을 3 ~ 6%로 하던 것을 연 2 ~ 4%로 함.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경우의 교환차금 잔액에 대한 분할납부 시 이자율(2%)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의 교환차금 잔액에 대한 분할납부 시 이자율(4%)을 규정함.

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점유 시점 판단 기준 일을 조정함(안 제39조)

1)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수의매각 요건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변경

마.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참조 : 재무과, 전화 : 453-22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2조제2항·제3항과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관리 위탁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받은 수탁자가”를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로, 이하 내용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을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로, “영 제21조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의”로 한다.

제2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0조제4항 중 다음의 산식을 아래와 같이 한다.

$$\frac{\begin{array}{l} \text{[토지] 대부를 받는 자가 다른 사람과} \\ \text{공동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text{[건물] 대부를 받는 해당 층의 총면적} \end{array}}{\begin{array}{l} \text{[토지, 건물]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 \text{사용하는 면적} \\ \text{[토지] 공동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 \text{사용하는 총 면적} \\ \text{[건물] 대부를 받는 해당 층의 총 면적} \end{array}} \times$$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를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로 한다.

-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4퍼센트”를 “연 2퍼센트”로, 같은 조 제2항 중 “연 6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6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연 3퍼센트”를 “연 2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를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로, “연 5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에 따라”로,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를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을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청장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점유·사용하고”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이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7조의2, 제6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 -----영 제12조제2항·제3항과 제21조에 따라 -----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 -----관리수탁자 ----- -----제14조에 따라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③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 -----관리수탁자 -----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관리수탁자 ----- ----- 관리수탁자 -----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 -----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7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3. (생략) <신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생략) ④ (생략)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건물의 경우 대부권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times \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text{[건물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 총면적]}$ ⑤ (생략)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 - 관 리 수 탁 자 ----- ----- ----- ⑤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영 제21조의 ----- -----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frac{\text{[토지, 건물]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text{[토지, 건물]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토지] 공용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times \text{[건물] 대부를 받는 해당 층의 총면적}} \times \text{[토지, 건물] 대부를 받는 해당 층의 총 면적}$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삭제>
---	--

2 ~ 3. (생략)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략)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 - - -
-----10년-----이내의

-----연-----2퍼센트

1.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 - - -

-- 연 -----4퍼센트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생략)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 - - -

연 4퍼센트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 제14조에 따라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 - - - -

----- 연 2퍼센트

- - - - -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제6호에

- - - - -

-- 연 3퍼센트

<신설>

제38조(조성원가의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내의 재산

3 ~ 4.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조성원가의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청장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할 때,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생략)

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
센터내의 재산

3 ~ 4.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2003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 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 4. (생략)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5. (현행과 같음)

제62조(변상금등의 분할 납부) ① 영 제 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 81조제1항에 따라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관련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생략)

제22조(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변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6.21>

제14조(사용료)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6.21>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6.21>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익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적용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수익매각을 할 수 있다.

1.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익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 3. (생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부서 협의와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 서 별 의 건			
협의개요	부서명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 1471 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3. 10. 15 ~ 2013. 10. 30
4. 보상협의 통지서 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 전 화 : (032) 453 - 2712
5. 공시송달 내역
 - 가. 송달내용 :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 나.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

소유자	주 소	등기번호	결과	사유	비고
이**	동구 석수로 1*-1	14442-0291-6732	반송	폐문부재	
이**	동구 송림동 1*5	14442-0291-6734	반송	주소불명	
배**	강원 횡성 강림 강림동3길 4*	14442-0291-6735	반송	폐문부재	
조**	서울 성북구 솔샘로25길 28, 117동 1*03호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아파트)	14442-0291-6742	반송	폐문부재	
최**	중구 신도시남로 15, 101동 *03호 (운서동, 금호베스트빌1단지아파트)	14442-0291-6757	반송	폐문부재	
배**	경기 안양시동안구 관평로 68, 꿈마을한신아파트 71*동 705호	14442-0291-6752	반송	수취인불명	
배*수	서울 은평구 녹번로 34-*	14442-0291-6754	반송	폐문부재	
배*리	서울 은평구 녹번로 34-*	14442-0291-6755	반송	폐문부재	

6.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3 - 1472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13. 10. 16. ~ 2013. 10. 31.
4. 공고 내용

도로위치	지적 면적 (㎡)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
				성 명	
간석동 510-23번지에서 분할된 간석동 510-40번지	6	8	6	오승채	본인 동의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남동구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7. 기타사항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13 - 1479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 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 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2013.10.14. 등기우편물 반송]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13.10.30.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저당)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3. 10.16. ~ 2013. 10.30.

2. 대상 자동차

신 청 대 상 차 량			이해관계내용	이 해 관 계 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 명	사 용 본 거 지			
43라1196	김호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자동차 저당설정 을부번호:11192005003875 설정일자:2005.02.17.	손형진	인천시 남동구 만경로 8번길 28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 (☎453-2941)

2013년 10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 - 1488호

2013년 제1회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채용예정 인원 : 7명
2. 시험방법 및 선발

시험단계 채용분야	제1차 시 험	제2차 시 험	제3차 시 험
환경 미화원	서류전형	체력검정	면접시험

- 가.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서류전형 합격자만 체력검정 응시 가능
 다. 체력검정 시험은 3개종목 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14명 선발 단, 종목별 0점 발생시 타 종목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종목 : 모래주머니머리위로들기(남 30kg, 여25kg), 윗몸일으키기, 남(턱걸이), 여(팔굽혀펴대달리기)
 - 기준표 : “별첨”
 라. 체력검정과 면접시험 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마.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체력검정 고득점자
 - 2순위 :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사람
 - 3순위 : 대형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삭기) 소지자
 - 4순위 : 주민등록상 남동구 장기거주자
 바. 최종합격자 중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및 고용하지 아니함
 사. “바”항에 의해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순위명부에 의하여 차순위자 고용
 아.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의한취업지원대상자는 법률에 정한 가점 부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일)

3. 응시자격

- 가. 시험공고일 6개월 이전 (2013.04.16이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하는 자
 나.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 60세 미만 ('54. 01. 01 ~ '93.12.31 출생한 자)
 다. 병역필자 (면제자 포함)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 임용결격사유 및 인천시남동구 환경미화원근무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마. 정신질환자 등 사회통념상 환경미화원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자를 제외한 신체건강하고 도로청소 작업능력이 있는 자

4. 시험시행 일정 및 제출서류

- 가.응시원서 접수(1차서류전형시험)
 - 일시 : 2013.10.30(수)~2013.11.01(금) 09:00~18:00까지
 - 장소 : 남동구청 청소과 청소행정팀
 - 방법 : 서류지참 본인 직접 제출

※ 응시원서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작성,우편 및 FAX 접수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최근 6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3.5x4.5cm) 사진 2매}
 - 자필이력서1부(허위 기재 시 불합격처리)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거주지변동사항 기재) 1부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2매내외,글씨크기15)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통 (원본지참)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1부 [공고일이전부터 3년전 기간 합산실적. (해당자에 한함)]
 -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체력검정시험대상자 공고

- 2013. 11. 05(화) 14:00 남동구청 홈페이지

다. 2차 체력검정 시험

- 일시 : 2013.11.06(수) 13:00
- 장소 : 남동종합문화체육 1호광장(테니스장)

※ 우천시 : 남동구청 7층 소강당으로 변경

※장소는 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체력검정 시험 합격자 발표

- 2013.11.12(화) 14:00 남동구청 홈페이지

마. 3차 면접시험

- 일시 : 2013.11.15(금) 14:00
- 장소 : 남동구청 개나리홀(4층)

※ 면접장소는 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11.18(월) 15:00 남동구청 홈페이지

사. 합격자 등록

- 일시 : 2013.11.21(목)~2013.11.22(금) 09:00~18:00

- 장 소 : 남동구청 청소과 청소행정팀(6층)

5. 응시자 주의사항

-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체력검정 시험 및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에 시험장소에 집합
 다.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체력검정 실시 중에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기타 각종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함
 마. 서류전형합격자, 체력검정합격자,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통지 아니하며, 인천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바.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청소과 청소행정팀 6층 (☎453-25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력검정시험 배점기준표

[남성]

종 목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30kg모래주머니 머리위로 들기	4분 이상	3분51초 ~ 4분	3분41초 ~ 3분50초	3분31초 ~ 3분40초	3분21초 ~ 3분30초	3분11초 ~ 3분20초	3분01초 ~ 3분10초	2분51초 ~ 3분	2분41초 ~ 2분50초	2분31초 ~ 2분40초	2분30초이하, 중도포기자
윗몸 일으키기 (1분 동안)	61회 이상	57~60	53~56	49~52	45~48	41~44	37~40	33~36	29~32	25~28	24회미만, 중도포기자
턱 걸 이 (1분 동안)	21회 이상	20~18	17~16	15~14	13~12	11~10	9~8	7~6	5~4	3~2	1회미만, 중도포기자

[여성]

종 목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25kg모래주머니 머리위로 들기	3분21초 이상	3분11초 ~ 3분20초	3분1초 ~ 3분10초	2분51초 ~ 3분	2분41초 ~ 2분50초	2분31초 ~ 2분40초	2분21초 ~ 2분30초	2분11초 ~ 2분20초	2분00초 ~ 2분10초	1분59초 ~ 1분50초	1분50초이하, 중도포기자
윗몸 일으키기 (1분 동안)	53회 이상	49~52	45~48	41~44	37~40	33~36	29~32	25~28	21~24	17~20	17회미만, 중도포기자
팔굽혀매달리기	22초 이상	20초 ~ 21초	18초 ~ 19초	16초 ~ 17초	14초 ~ 15초	12초 ~ 13초	10초 ~ 11초	8초 ~ 9초	6초 ~ 7초	4초 ~ 5초	3초미만, 중도포기자

○ 체력검정시험 측정 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모래주머니 머리위로 들어올리기 (남,여)	- 호명과 동시에 꾸그러 앉는다 - 꾸그러 앉은 상태에서 호각을 붐과 동시에 남자 30kg, 여자 25kg의 모래주머니를 들고 일어서서 머리위로 들어 올린다. - 머리위로 들어 올림과 동시에 시간을 측정하며 들어 올리고 있는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모래주머니가 머리에 닿거나 머리 아래로 내려 올 경우 시간에서 제외한다
윗몸 일으키기 (남,여)	-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복근력을 이용 몸을 일으켜 세우는 동작의 횟수를 측정한다 - 다리는 편안한 각으로 유지, 두손은 머리 뒤로 깎지껴 잡는다 -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간다 - 1분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 부정확한 동작 : · 깎지를 풀거나 몸을 일으켜 세웠을 때 ·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 경우 · 누운 자세로 돌아갈 때 등이 매트에 닿지 않는 경우 등 · 엉덩이를 들었다가 뺏기는 일명 배치기 동작
턱 걸 이 (남)	- 철봉에 손등이 응시자 쪽으로 향하게 철봉을 잡는다 (의자에 섬) - "시작" 구령과 함께 진행자가 의자를 빼고 시작한다. - 턱은 철봉 위치 이상으로 올라오고 팔을 펼 때는 180도까지 펴야 유효한 횟수로 인정 ※ 부정확한 동작 : 내려올 때 팔이 180미만, 다리가 땅에 닿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함.
팔굽혀매달리기 (여)	- 손등을 응시자 쪽으로 향하게 철봉을 잡고 턱을 철봉 윗부분에 위치 시킨 상태로 매달려 있는 시간을 측정 한다. - 매달리기 준비시에는 의자 등을 사용한다. ※ 부정확한 동작 : 턱이 철봉 아래로 내려와 매달리는 경우, 철봉을 잡을때 손등을 몸 바깥방향으로 한 경우, 턱이 철봉에 닿을 경우 등

<별첨 2>

응 시 원 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① 2013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합격 또는 고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3 년 월 일 성명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최종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 자 격 증	
⑥ 경 력 (최 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				
⑦ 병 역 관 계	병 역 필			병 역 면 제	
⑧ 응 시 번 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 별	남	⑬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⑪ 주민 등록번호		⑫ 연 령	만 세	

계

인

응 시 표					
① 2013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					
⑧ 응 시 번 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 별	남	⑬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⑪ 주민 등록번호		⑫ 연 령	만 세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시 험 일 자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 시행일자를 기재할 것.
- ② 주 소 : 현재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것.
- ③ 전 화 번 호 : 시험 응시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 ④ 최종출신학교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을 기재하고 수학구분 중 해당란에 ○표할 것.
- ⑤ 자 격 증 :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자격증 내역을 기재할 것.
- ⑥ 경 력 : 가장 최근 근무한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할 것.
- ⑦ 병 역 관 계 : 병역사항을 해당란에 ○표할 것. (미필자는 응시자격 없음)
- ⑧ 응 시 번 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 ⑨ 성 명 : 한글과 한자로 병서하여 기재할 것.
- ⑩ 성 별 : 해당 성별란에 ○표할 것.
- ⑪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 ⑫ 연 령 : 주민등록증에 의해 시험예정일 현재 만 연령을 기재할 것.
- ⑬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탈모, 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붙일 것.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분야 : 환경미화원

○ 응시동기 :

○ 자기소개 (구체적으로 작성) :

○ 기타 (특기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사 진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위)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 위(급)	업 무 내 용	
자 격 사 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13년 월 일 성 명 : (인)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3 - 32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10. 25.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3. 10. 15. ~ 2013. 10. 24.(10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논고-296	섬진강메기 매운탕	박순옥	은청로 9, A동 302호 (고잔동, 현대종합상가)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09.02	2013.10.25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10. 24.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제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3년 10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고 제2013 - 1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은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으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직접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2010년 11월 제정되어 2011년 2월에 시행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15개 행위기준 명시
 - 공정한 직무수행 : 4개 (안 제4조 ~ 안 제7조)
 -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 5개 (안 제8조 ~ 안 제12조)
 -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 6개 (안 제13조 ~ 안 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안 제19조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안 제21조 ~ 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 (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2, 5030 / 팩스 032-453-501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한정희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1512
----------	------

발의연월일 : 2013년 10월 14일
발 의 자 : 한정희 의원 외 인
찬 성 자 : 12 인

□ 제안이유

-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은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으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2010년 11월 제정되어 2011년 2월에 시행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15개 행위기준 명시
 - 공정한 직무수행 : 4개 (안 제4조 ~ 안 제7조)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5개 (안 제8조 ~ 안 제12조)
 -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 6개 (안 제13조 ~ 안 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안 제19조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안 제21조 ~ 안 제33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 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구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원의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구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 받은 자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항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총 수(數)는 전체 위원 수
(數)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
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
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

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남동구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자문) 내용

제31조(수당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1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조례 제4조 관련)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소명자	성명		정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 의안 심사 ☐ 예산 심의 ☐ 행정감사·조사등 ☐ 기타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내용				

20 . . .

소명자 (서명)

2) 별지 2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조례 제13조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계		명		금액	부담기관
					천원	
20 . . . 신청자 (서명)						

3) 별지 3

국내외 활동보고서

(조례 제13조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동 의원	성명	직위	정당	소속위원회
개요	목적			
	지원기관 (단체)		지원 받은 내역	
	기간		방문지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20 . . .

제출자

(서명)

4) 별지 4

외부강의 · 회의등 신고서

(조례 제14조 관련)

외부강의 · 회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외부강의 및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1회 평균 시간 :	회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5) 별지 5

영리행위 신고서

(조례 제15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선거구분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황	명칭				
	직위		영리행위기간		
	보수	(택) 연월원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6) 별지 6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조례 제16조 관련)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명		정당	
	소속위원회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7) 별지 7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조례 제19조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피신고자	성명		직위	
	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 내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0 . . . 신고자 성 명 (서명)				

8) 별지 8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조례 제20조 관련)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 당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랑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자 (서명)

9) 별지 9

금품등 접수·처리 대장

(조례 제20조 관련)

금품등 접수·처리 대장

[illegible]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3 - 102호

통 반 구역조정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13. 10. 25.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 첨 부 ”

2013. 10.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통·반 구역 조정 세부내역 [논현고잔동]

 통 · 반 구역 조정현황

구 분	조정전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남동구	624	3,552	3	10	627	3,562	
논현고잔동	26	161	3	10	29	171	

 통 · 반 구역 조정사유 및 내역

기 존	조 정 사 유	조정결과								
4통(7개반) 7통(8개반)	○ 통별 인구 불균형 해소(4통 7세대, 7통 582세대) ○ 변경내역 : 7통 일부지역 4통에 편입 <table><tr><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tr><td>4통 7개반(7세대)</td><td>4통 3개반(187세대)</td></tr><tr><td>7통 8개반(582세대)</td><td>7통 6개반(402세대)</td></tr></table> ※ 공원 등 주민 미거주 지역 인접반과 통합(4통)	변 경 전	변 경 후	4통 7개반(7세대)	4통 3개반(187세대)	7통 8개반(582세대)	7통 6개반(402세대)	6개반 ↓		
변 경 전	변 경 후									
4통 7개반(7세대)	4통 3개반(187세대)									
7통 8개반(582세대)	7통 6개반(402세대)									
21통(8개반) 22통(8개반)	○ 1개 통의 지나친 인구 과밀화 (21통 712세대, 22통 651세대) ○ 변경내역:2개통을 3개통으로 변경(1개통 신설) <table><tr><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tr><td>21통 8개반(712세대)</td><td>21통 6개반(456세대)</td></tr><tr><td></td><td>27통 8개반(506세대)</td></tr><tr><td>22통 8개반(651세대)</td><td>22통 6개반(401세대)</td></tr></table>	변 경 전	변 경 후	21통 8개반(712세대)	21통 6개반(456세대)		27통 8개반(506세대)	22통 8개반(651세대)	22통 6개반(401세대)	1개통 ↑ 4개반 ↑
변 경 전	변 경 후									
21통 8개반(712세대)	21통 6개반(456세대)									
	27통 8개반(506세대)									
22통 8개반(651세대)	22통 6개반(401세대)									
24통(8개반)	○ 2013년 10월 신규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 예정에 따른 인구수 증가로 통·반 신설 ○ 변경내역 : 24통을 3개통으로 분통 <table><tr><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tr><td></td><td>24통 8개반</td></tr><tr><td>24통 8개반</td><td>28통 6개반(신설)</td></tr><tr><td></td><td>29통 6개반(신설)</td></tr></table>	변 경 전	변 경 후		24통 8개반	24통 8개반	28통 6개반(신설)		29통 6개반(신설)	2개통 ↑ 12개반 ↑
변 경 전	변 경 후									
	24통 8개반									
24통 8개반	28통 6개반(신설)									
	29통 6개반(신설)									

 통 · 반 조정 세부내역

 논현고잔동 통·반구역 조정 세부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4	1	논현동 2블럭 연립택지 일부, 산106	0	4	1	논현동 2블럭(연립택지), 8블럭(연립택지, 단독택지), 중·고교, 산106 근린생활시설, 병원, 공원	42	기존 4통 1~7반, 7통5반 일부지역
	2	논현동 2블럭 연립택지 일부	0					
	3	논현동 단독택지, 중·고교	7					
	4	논현동 8블럭 연립택지 일부	0					
	5	논현동 8블럭 연립택지 일부	0					
	6	논현동 8블럭 연립택지 일부	0					
	7	논현동 8블럭 연립택지 일부	0					
7	5	기존 7통 5반중 일부 근린생활시설, 병원, 공원 (7통 5반 총 세대수 120세대)	35	7	2	한화에코메트로(아) 1005동 1층~20층	75	기존 7통7반
	7	한화에코메트로(아) 1005동 1층~20층	75		3	한화에코메트로(아) 1005동 21층~40층	70	기존 7통8반
	8	한화에코메트로(아) 1005동 21층~40층	70					
21	1	한화에코메트로(아) 1201동	76	21	1	한화에코메트로(아) 1201동	76	기존 21통 1~6반
	2	한화에코메트로(아) 1202동	88		2	한화에코메트로(아) 1202동	88	
	3	한화에코메트로(아) 1203동	50		3	한화에코메트로(아) 1203동	50	
	4	한화에코메트로(아) 1204동	77		4	한화에코메트로(아) 1204동	77	
	5	한화에코메트로(아) 1205동	72		5	한화에코메트로(아) 1205동	72	
	6	한화에코메트로(아) 1206동	93		6	한화에코메트로(아) 1206동	93	
	7	한화에코메트로(아) 1207동	128	27	1	한화에코메트로(아) 1207동 1~16층	64	기존 21통 7,8반 22통 1,2반
					2	한화에코메트로(아) 1207동 17~31층	64	
	8	한화에코메트로(아) 1208동	129		3	한화에코메트로(아) 1208동 1~16층	66	
					4	한화에코메트로(아) 1208동 17~31층	63	
					5	한화에코메트로(아) 1209동 1~16층, 근린생활시설	63	
					6	한화에코메트로(아) 1209동 17~31층	62	
22	1	한화에코메트로(아) 1209동, 근린생활시설	125	22	7	한화에코메트로(아) 1210동 1~16층	64	기존 22통 3~8반
	2	한화에코메트로(아) 1210동	124		8	한화에코메트로(아) 1210동 17~31층	60	
	3	한화에코메트로(아) 1211동	101		1	한화에코메트로(아) 1211동	101	
	4	한화에코메트로(아) 1212동	101		2	한화에코메트로(아) 1212동	101	
	5	한화에코메트로(아) 1213동	48		3	한화에코메트로(아) 1213동	48	
	6	한화에코메트로(아) 1214동	48		4	한화에코메트로(아) 1214동	48	
	7	한화에코메트로(아) 1215동, 중학교	51		5	한화에코메트로(아) 1215동, 중학교	51	
	8	한화에코메트로(아) 1216동	52		6	한화에코메트로(아) 1216동	52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24	1	한화에코메트로(아) 503동 1~16층	64	24	1	한화에코메트로(아) 503동 1~16층	64	기존 24통 1~8반
	2	한화에코메트로(아) 503동 17~32층	68		2	한화에코메트로(아) 503동 17~32	68	
	3	한화에코메트로(아) 504동 1~15층	59		3	한화에코메트로(아) 504동 1~15층	59	
	4	한화에코메트로(아) 504동 16~30층	64		4	한화에코메트로(아) 504동 16~30층	64	
	5	한화에코메트로(아) 505동 1~20층, 근린생활시설, 4블럭	79		5	한화에코메트로(아) 505동 1~20층, 근린생활시설, 4블럭	79	
	6	한화에코메트로(아) 505동 21~40층	78		6	한화에코메트로(아) 505동 21~40층	78	
	7	한화에코메트로(아) 506동 1~19층	79		7	한화에코메트로(아) 506동 1~19층	79	
	8	한화에코메트로(아) 506동 20~38층	73		8	한화에코메트로(아) 506동 20~38층	73	
신 설 (기존 24통 5반 도시개발사업지구 C-10 블럭)	28	신 설		1	에코메트로 더 타워 A동 오피스텔 4~14층, 단지 내 상가	66	신 설	
				2	에코메트로 더 타워 A동 오피스텔 15~27층	72		
				3	에코메트로 더 타워 A동 오피스텔 28~39층	72		
				4	에코메트로 더 타워 A동 오피스텔 40~51층	72		
				5	에코메트로 더 타워 A동 아파트 4~26층	88		
				6	에코메트로 더 타워 A동 아파트 27~51층	86		
	29	신 설		1	에코메트로 더 타워 B동 4~16층	78		
				2	에코메트로 더 타워 B동 17~30층	78		
				3	에코메트로 더 타워 B동 31~48층	85		
				4	에코메트로 더 타워 C동 4~16층, 단지 옆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78		
				5	에코메트로 더 타워 C동 17~30층	78		
				6	에코메트로 더 타워 C동 31~46층	73		

통·반 구역 조정 현황

▷ 승인 일자 : 2013.10.25

구 분 동 명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624	3,552	3	10	627	3,562	
구월1동	36	197	0	0	36	197	
구월2동	41	222	0	0	41	222	
구월3동	25	137	0	0	25	137	
구월4동	31	171	0	0	31	171	
간석1동	38	214	0	0	38	214	
간석2동	20	139	0	0	20	139	
간석3동	49	257	0	0	49	257	
간석4동	39	213	0	0	39	213	
만수1동	35	171	0	0	35	171	
만수2동	33	177	0	0	33	177	
만수3동	23	132	0	0	23	132	
만수4동	32	198	0	0	32	198	
만수5동	28	184	0	0	28	184	
만수6동	33	185	0	0	33	185	
장수서창동	31	163	0	0	31	163	
남촌도림동	34	193	0	0	34	193	
논현1동	39	241	0	0	39	241	
논현2동	31	197	0	0	31	197	
논현고잔동	26	161	3	10	29	171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13 - 103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과 관련하여 신설된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세계좌표계		지역좌표계		가리좌표계	
	X(m)	Y(m)	X(m)	Y(m)	X(m)	Y(m)
		별			첨	
기 준 원 점 명	세계(중부), 지역(중부), 기타(가리)					
소 재 지	별첨					
표 지 재 질	표철(지적도근점)					
설 치 일 자	2013년 4월 3일(지적도근점)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지적도근점 100점(신설)					

지 적 기 준 (도 근) 점 성 과 표

번호	도근 번호	도선 등급	도선 명	표지 재질	토지소재지	지 적 (임 야) 도	설치 및 재설치 연월일	가리좌표				설치 및 재설치 연월일	중부좌표				설치 및 재설치 연월일	세계측지좌표				원점	표 고	조사연월일
								X (m)	Y (m)	B	L		X (m)	Y (m)	B	L		X (m)	Y (m)	B	L			
1	7745	1	가	표철	남동구 서창동 697 번지		2013년04월03일	-667.59	-11147.21			2013년04월03일	435559.83	177038.08			2013년04월03일	535865.725	177108.343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2	7746	1	가	표철	남동구 서창동 697 번지		2013년04월03일	-585.76	-11171.51			2013년04월03일	435641.69	177013.90			2013년04월03일	535947.593	177084.165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3	7747	1	가	표철	남동구 서창동758 번지		2013년04월03일	-538.57	-11026.38			2013년04월03일	435688.67	177159.11			2013년04월03일	535994.573	177229.373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4	7748	1	가	표철	남동구 서창동758 번지		2013년04월03일	-515.31	-10930.58			2013년04월03일	435711.78	177254.94			2013년04월03일	536017.687	177325.204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5	7749	1	대	표철	남동구 서창동758 번지		2013년04월03일	-395.65	-10979.37			2013년04월03일	435831.53	177206.33			2013년04월03일	536137.428	177276.597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6	7750	1	대	표철	남동구 서창동 758 번지		2013년04월03일	-321.01	-11005.55			2013년04월03일	435906.21	177180.26			2013년04월03일	536212.108	177250.524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7	7751	1	대	표철	남동구 서창동 760 번지		2013년04월03일	-252.88	-11025.39			2013년04월03일	435974.37	177160.52			2013년04월03일	536280.267	177230.784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8	7752	1	대	표철	남동구 서창동 759 번지		2013년04월03일	-239.70	-10968.31			2013년04월03일	435987.46	177217.62			2013년04월03일	536293.360	177287.883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9	7753	1	대	표철	남동구 서창동 759 번지		2013년04월03일	-193.20	-10893.40			2013년04월03일	436033.84	177292.61			2013년04월03일	536339.746	177362.878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10	7754	1	라	표철	남동구 서창동 755 번지		2013년04월03일	-157.95	-10804.38			2013년04월03일	436068.96	177381.69			2013년04월03일	536374.865	177451.954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11	7755	1	사	표철	남동구 서창동 755 번지		2013년04월03일	-89.61	-10811.26			2013년04월03일	436137.31	177374.91			2013년04월03일	536443.220	177445.177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12	7756	1	사	표철	남동구 서창동 755 번지		2013년04월03일	26.66	-10841.41			2013년04월03일	436253.63	177344.93			2013년04월03일	536559.538	177415.200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13	7757	1	사	표철	남동구 서창동 755 번지		2013년04월03일	110.91	-10887.85			2013년04월03일	436337.95	177298.62			2013년04월03일	536643.857	177368.890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14	7758	1	사	표철	남동구 서창동 752 번지		2013년04월03일	192.36	-10897.18			2013년04월03일	436419.41	177289.42			2013년04월03일	536725.319	177359.689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15	7759	1	재	표철	남동구 서창동 752 번지		2013년04월03일	206.70	-10765.57			2013년04월03일	436433.55	177421.04			2013년04월03일	536739.464	177491.310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16	7760	1	재	표철	남동구 서창동 749 번지		2013년04월03일	240.42	-10612.82			2013년04월03일	436467.04	177573.84			2013년04월03일	536772.949	177644.103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17	7761	1	나	표철	남동구 서창동 756 번지		2013년04월03일	-478.19	-10854.65			2013년04월03일	435748.79	177330.93			2013년04월03일	536054.697	177401.190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18	7762	1	마	표철	남동구 서창동 755 번지		2013년04월03일	-407.66	-10810.25			2013년04월03일	435819.25	177375.44			2013년04월03일	536125.156	177445.704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19	7763	1	마	표철	남동구 서창동 755 번지		2013년04월03일	-259.19	-10819.26			2013년04월03일	435967.74	177366.66			2013년04월03일	536273.645	177436.920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20	7764	1	배	표철	남동구 서창동 752 번지		2013년04월03일	177.97	-10965.06			2013년04월03일	436405.12	177221.52			2013년04월03일	536711.032	177291.785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21	7765	1	배	표철	남동구 서창동 752 번지		2013년04월03일	198.82	-11065.40			2013년04월03일	436426.12	177121.22			2013년04월03일	536732.032	177191.479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22	7766	1	배	표철	남동구 서창동 752 번지		2013년04월03일	189.18	-11129.04			2013년04월03일	436416.58	177057.56			2013년04월03일	536722.492	177127.819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23	7767	1	여	표철	남동구 서창동 748 번지		2013년04월03일	-578.53	-10179.44			2013년04월03일	435647.44	178005.99			2013년04월03일	535953.347	178076.243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24	7768	1	저	표철	남동구 서창동 771 번지		2013년04월03일	-639.67	-10149.26			2013년04월03일	435586.26	178036.08			2013년04월03일	535892.165	178106.331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25	7769	1	저	표철	남동구 서창동 771 번지		2013년04월03일	-695.56	-10127.88			2013년04월03일	435530.34	178057.37			2013년04월03일	535836.241	178127.622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26	7770	1	배	표철	남동구 서창동 748 번지		2013년04월03일	-243.48	-9758.50			2013년04월03일	435981.86	178427.43			2013년04월03일	536287.767	178497.686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27	7771	1	배	표철	남동구 서창동 748 번지		2013년04월03일	-201.00	-9697.33			2013년04월03일	436024.25	178488.67			2013년04월03일	536330.152	178558.920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28	7772	1	머	표철	남동구 서창동 798 번지		2013년04월03일	-143.91	-9734.81			2013년04월03일	436081.39	178451.27			2013년04월03일	536387.295	178521.532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29	7773	1	머	표철	남동구 서창동 798 번지		2013년04월03일	-33.94	-9742.72			2013년04월03일	436191.38	178443.53			2013년04월03일	536497.282	178513.789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30	7774	1	머	표철	남동구 서창동 799 번지		2013년04월03일	67.97	-9742.84			2013년04월03일	436293.29	178443.56			2013년04월03일	536599.191	178513.815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31	7775	1	하	표철	남동구 서창동 799 번지		2013년04월03일	146.48	-9763.37			2013년04월03일	436371.83	178423.15			2013년04월03일	536677.732	178493.406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32	7776	1	개	표철	남동구 서창동 798 번지		2013년04월03일	61.42	-9669.50			2013년04월03일	436286.63	178516.89			2013년04월03일	536592.531	178587.144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33	7777	1	개	표철	남동구 서창동 800 번지		2013년04월03일	94.05	-9565.47			2013년04월03일	436319.11	178620.97			2013년04월03일	536625.012	178691.224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34	7778	1	패	표철	남동구 서창동 800 번지		2013년04월03일	132.53	-9558.13			2013년04월03일	436357.57	178628.37			2013년04월03일	536663.477	178698.625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35	7779	1	대	표철	남동구 서창동 800 번지		2013년04월03일	-5.49	-9543.60			2013년04월03일	436219.53	178642.69			2013년04월03일	536525.434	178712.944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36	7780	1	대	표철	남동구 서창동 748 번지		2013년04월03일	-33.69	-9513.32			2013년04월03일	436191.29	178672.92			2013년04월03일	536497.194	178743.174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37	7781	1	대	표철	남동구 서창동 8002번지		2013년04월03일	-31.09	-9477.02			2013년04월03일	436193.84	178709.23			2013년04월03일	536499.743	178779.484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38	7782	1	네	표철	남동구 서창동 8002번지		2013년04월03일	3.09	-9449.45			2013년04월03일	436227.98	178736.85			2013년04월03일	536533.880	178807.103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제113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3. 10. 18. 금요일

39	7783	1	레표철	남동구 서창동 748 번지		2013년04월03일	-80.58	-9597.08			2013년04월03일	436144.52	178589.09			2013년04월03일	536450.426	178659.348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40	7784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49 번지		2013년04월03일	-521.98	-10321.18			2013년04월03일	435704.20	177864.34			2013년04월03일	536010.109	177934.595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41	7785	1	캐표철	남동구 서창동 790 번지		2013년04월03일	-498.08	-10274.88			2013년04월03일	435728.03	177910.67			2013년04월03일	536033.940	177980.924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42	7786	1	테표철	남동구 서창동 795 번지		2013년04월03일	-559.29	-10241.28			2013년04월03일	435666.77	177944.17			2013년04월03일	535972.683	178014.427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43	7787	1	테표철	남동구 서창동 795 번지		2013년04월03일	-542.40	-10209.54			2013년04월03일	435683.62	177975.94			2013년04월03일	535989.530	178046.196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44	7788	1	테표철	남동구 서창동 790 번지		2013년04월03일	-471.00	-10214.79			2013년04월03일	435755.03	177970.80			2013년04월03일	536060.933	178041.056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45	7789	1	테표철	남동구 서창동 8002번지		2013년04월03일	-459.63	-10297.44			2013년04월03일	435766.52	177888.16			2013년04월03일	536072.427	177958.422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46	7790	1	테표철	남동구 서창동 790 번지		2013년04월03일	-421.70	-10222.86			2013년04월03일	435804.35	177962.81			2013년04월03일	536110.248	178033.061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47	7791	1	테표철	남동구 서창동 788 번지		2013년04월03일	-371.56	-10173.29			2013년04월03일	435854.42	178012.45			2013년04월03일	536160.313	178082.710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48	7792	1	테표철	남동구 서창동 788 번지		2013년04월03일	-295.69	-10141.73			2013년04월03일	435930.23	178044.12			2013년04월03일	536236.131	178114.383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49	7793	1	테표철	남동구 서창동 788 번지		2013년04월03일	-283.06	-10180.20			2013년04월03일	435942.91	178005.67			2013년04월03일	536248.814	178075.930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50	7794	1	테표철	남동구 서창동 789 번지		2013년04월03일	-353.23	-10209.35			2013년04월03일	435872.80	177976.42			2013년04월03일	536178.702	178046.676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51	7795	1	패표철	남동구 서창동 790 번지		2013년04월03일	-387.41	-10247.00			2013년04월03일	435838.67	177938.72			2013년04월03일	536144.574	178008.979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52	7796	1	패표철	남동구 서창동 791 번지		2013년04월03일	-429.41	-10315.04			2013년04월03일	435796.77	177870.61			2013년04월03일	536102.672	177940.867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53	7797	1	계표철	남동구 서창동 791 번지		2013년04월03일	-393.09	-10329.18			2013년04월03일	435833.11	177856.52			2013년04월03일	536139.018	177926.778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54	7798	1	계표철	남동구 서창동 790 번지		2013년04월03일	-354.60	-10272.94			2013년04월03일	435871.51	177912.83			2013년04월03일	536177.412	177983.084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55	7799	1	계표철	남동구 서창동 788 번지		2013년04월03일	-320.51	-10236.09			2013년04월03일	435905.55	177949.73			2013년04월03일	536211.451	178019.982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56	7800	1	해표철	남동구 서창동 788 번지		2013년04월03일	-271.16	-10216.34			2013년04월03일	435954.86	177969.55			2013년04월03일	536260.767	178039.806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57	7801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50 번지		2013년04월03일	-333.94	-10578.49			2013년04월03일	435892.63	177607.31			2013년04월03일	536198.533	177677.565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58	7802	1	캐표철	남동구 서창동 762 번지		2013년04월03일	-305.56	-10521.40			2013년04월03일	435920.93	177664.44			2013년04월03일	536226.831	177734.703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59	7803	1	캐표철	남동구 서창동 762 번지		2013년04월03일	-256.26	-10554.37			2013년04월03일	435970.26	177631.54			2013년04월03일	536276.167	177701.803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60	7804	1	캐표철	남동구 서창동 762 번지		2013년04월03일	-211.62	-10572.44			2013년04월03일	436014.93	177613.54			2013년04월03일	536320.835	177683.801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61	7805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50 번지		2013년04월03일	-227.54	-10627.07			2013년04월03일	435999.10	177558.89			2013년04월03일	536305.002	177629.149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62	7806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50 번지		2013년04월03일	-272.62	-10601.46			2013년04월03일	435953.98	177584.43			2013년04월03일	536259.886	177654.682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63	7807	1	태표철	남동구 서창동 750 번지		2013년04월03일	-164.79	-10636.10			2013년04월03일	436061.86	177549.95			2013년04월03일	536367.769	177620.209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64	7808	1	태표철	남동구 서창동 749 번지		2013년04월03일	-134.17	-10526.71			2013년04월03일	436092.32	177659.39			2013년04월03일	536398.229	177729.650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65	7809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83 번지		2013년04월03일	100.57	-10262.12			2013년04월03일	436326.67	177924.33			2013년04월03일	536632.569	177994.595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66	7810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83 번지		2013년04월03일	102.23	-10225.76			2013년04월03일	436328.28	177960.69			2013년04월03일	536634.175	178030.959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67	7811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83 번지		2013년04월03일	102.17	-10184.36			2013년04월03일	436328.16	178002.09			2013년04월03일	536634.055	178072.357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68	7812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83 번지		2013년04월03일	99.91	-10144.56			2013년04월03일	436325.84	178041.88			2013년04월03일	536631.735	178112.148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69	7813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83 번지		2013년04월03일	112.89	-10105.79			2013년04월03일	436338.76	178080.67			2013년04월03일	536644.655	178150.932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70	7814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83 번지		2013년04월03일	179.31	-10120.00			2013년04월03일	436405.20	178066.56			2013년04월03일	536711.099	178136.819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71	7815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83 번지		2013년04월03일	186.26	-10164.70			2013년04월03일	436412.22	178021.87			2013년04월03일	536718.114	178092.129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72	7816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83 번지		2013년04월03일	193.61	-10206.55			2013년04월03일	436419.63	177980.03			2013년04월03일	536725.523	178050.292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73	7817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83 번지		2013년04월03일	199.15	-10248.67			2013년04월03일	436425.23	177937.92			2013년04월03일	536731.122	178008.185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74	7818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83 번지		2013년04월03일	193.23	-10296.09			2013년04월03일	436419.38	177890.50			2013년04월03일	536725.272	177960.757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75	7819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82 번지		2013년04월03일	175.56	-10079.88			2013년04월03일	436401.39	178106.68			2013년04월03일	536707.292	178176.935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76	7820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82 번지		2013년04월03일	205.93	-10071.38			2013년04월03일	436431.74	178115.22			2013년04월03일	536737.648	178185.477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77	7821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82 번지		2013년04월03일	273.85	-10084.60			2013년04월03일	436499.67	178102.10			2013년04월03일	536805.585	178172.352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78	7822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782 번지		2013년04월03일	314.58	-10056.15			2013년04월03일	436540.36	178130.62			2013년04월03일	536846.269	178200.873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79	7823	1	채표철	남동구 서창동 656 번지		2013년04월03일	311.47	-9998.12			2013년04월03일	436537.17	178188.65			2013년04월03일	536843.076	178258.900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80	7824	1	배표철	남동구 서창동 780 번지		2013년04월03일	241.28	-10318.89			2013년04월03일	436467.46	177867.76			2013년04월03일	536773.359	177938.011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81	7825	1	배표철	남동구 서창동 779 번지		2013년04월03일	270.35	-10346.32			2013년04월03일	436496.58	177840.39			2013년04월03일	536802.473	177910.647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82	7826	1	배표철	남동구 서창동 780 번지		2013년04월03일	263.69	-10280.89			2013년04월03일	436489.82	177905.79			2013년04월03일	536795.722	177976.045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제113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3. 10. 18. 금요일

83	7827	1	매	표철	남동구 서창동 778 번지	2013년04월03일	310.91	-10327.70		2013년04월03일	436537.11	177859.07	2013년04월03일	536843.005	177929.325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84	7828	1	배	표철	남동구 서창동 780 번지	2013년04월03일	285.18	-10244.47		2013년04월03일	436511.25	177942.25	2013년04월03일	536817.154	178012.503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85	7829	1	매	표철	남동구 서창동 642 번지	2013년04월03일	351.26	-10308.77		2013년04월03일	436577.43	177878.06	2013년04월03일	536883.326	177948.314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86	7830	1	캐	표철	남동구 서창동 776 번지	2013년04월03일	290.96	-10401.47		2013년04월03일	436517.28	177785.27	2013년04월03일	536823.174	177855.527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87	7831	1	캐	표철	남동구 서창동 776 번지	2013년04월03일	331.89	-10386.56		2013년04월03일	436558.18	177800.25	2013년04월03일	536864.078	177870.503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88	7832	1	캐	표철	남동구 서창동 776 번지	2013년04월03일	375.24	-10370.69		2013년04월03일	436601.50	177816.18	2013년04월03일	536907.401	177886.431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89	7833	1	캐	표철	남동구 서창동 776 번지	2013년04월03일	392.28	-10365.10		2013년04월03일	436618.53	177821.79	2013년04월03일	536924.429	177892.043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90	7834	1	타	표철	남동구 서창동 776 번지	2013년04월03일	442.71	-10361.41		2013년04월03일	436668.95	177825.56	2013년04월03일	536974.854	177895.812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91	7835	1	타	표철	남동구 서창동 630 번지	2013년04월03일	433.83	-10242.16		2013년04월03일	436659.90	177944.78	2013년04월03일	536965.797	178015.039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92	7836	1	해	표철	남동구 서창동 630 번지	2013년04월03일	439.08	-10203.92		2013년04월03일	436665.09	177983.03	2013년04월03일	536970.984	178053.289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93	7837	1	해	표철	남동구 서창동 781 번지	2013년04월03일	436.73	-10158.43		2013년04월03일	436662.67	178028.52	2013년04월03일	536968.568	178098.776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94	7838	1	해	표철	남동구 서창동 781 번지	2013년04월03일	403.97	-10111.54		2013년04월03일	436629.84	178075.35	2013년04월03일	536935.735	178145.615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95	7839	1	개	표철	남동구 서창동 631 번지	2013년04월03일	351.18	-10117.72		2013년04월03일	436577.05	178069.09	2013년04월03일	536882.956	178139.352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96	7840	1	개	표철	남동구 서창동 631 번지	2013년04월03일	327.55	-10163.12		2013년04월03일	436553.49	178023.66	2013년04월03일	536859.394	178093.919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97	7841	1	개	표철	남동구 서창동 631 번지	2013년04월03일	306.78	-10206.85		2013년04월03일	436532.79	177979.90	2013년04월03일	536838.692	178050.159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98	7842	1	대	표철	남동구 서창동 631 번지	2013년04월03일	336.02	-10231.23		2013년04월03일	436562.07	177955.57	2013년04월03일	536867.970	178025.827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99	7843	1	내	표철	남동구 서창동 629 번지	2013년04월03일	375.59	-10203.59		2013년04월03일	436601.60	177983.26	2013년04월03일	536907.496	178053.519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
100	7844	1	래	표철	남동구 서창동 628 번지	2013년04월03일	382.06	-10248.38		2013년04월03일	436608.14	177938.49	2013년04월03일	536914.035	178008.749	가리원점,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2013년04월03일